



##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위원 임용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0.4.23] [한국방송통신대학교학규 제1110호, 2020.4.23, 일부개정]

교무과 02-3668-4123

**제1조(목적)**이 규정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위원의 임용기준과 절차 및 임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소속)**① 연구위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부속시설(지역대학 제외) 및 연구시설 소속으로 한다. <개정 2001.11.22, 2011.1.6, 2018.11.14>

② 연구위원의 근무부서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8.11.14>

**제3조(구분)**연구위원은 그 자격 및 경력에 따라 일반연구위원과 선임연구위원 및 책임연구위원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. <개정 2012.2.28, 2018.11.14>

**제4조(자격 등)** 연구위원은 교육학, 심리학, 사회학, 전산학, 방송학, 정보·통신공학, 행정학, 경영학, 법학,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. <개정 2018.11.14>

**제5조(임용방법)**① 연구위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8.11.14>

② 임용분야와 소요인원은 해당 부서장 요청에 따라 교무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결정한다.

③ 임용 후보자는 서류심사, 연구실적물 심사 및 면접시험 평가표를 근거로 하여 총장이 선정한다. <개정 2005.9.29, 2011.1.6>

④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마친 후 총장이 임용한다. <개정 2005.9.29, 2011.1.6>

**제6조(서류심사 기준)**신규 임용 후보자의 서류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1.6>

1.학·경력에 따른 자격 유무

2.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과 모집분야와의 적합 여부 <개정 2005.09.29>

**제7조(연구실적 심사)**신규 임용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구실적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6>

**제8조(연구실적물의 심사위원 추천 및 임용)**①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 분야의 위원 3명 이상이 심사한다. <개정 2012.9.19>

② 심사위원은 해당 부서장이 2배수(학외 교원 2명이상 포함)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, 그 중 1명 이상은 타교의 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6, 2012.9.19>

**제9조(연구실적물의 심사)**① 심사위원은 연구실적물 각 편에 대하여 해당 전공 분야와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, 연구실적물의 내용을 평가하여 5단계(수, 우, 미, 양, 가)의 등급을 부여한다. <개정 2005.9.29, 2011.1.6>

② 제1항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격으로 한다. <신설 2005.9.29> <개정 2011.1.6>

1.해당 전공분야의 적합 여부는 심사위원 3분의2이상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<신설 2005.09.29, 개정 2012.9.19>

2.연구실적물의 내용 평가 결과는 각 편에 대하여 3분의2이상의 심사위원 점수가 "우"(80점)이상인 경우 <신설 2005.09.29, 개정 2012.9.19>

**제10조(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 및 비율)**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것으로 10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2.9.19>

**제11조(면접시험 심사위원 및 평가방법)**①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교무처장, 해당 부서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으로 한다.

② 면접시험 대상자는 제9조제2항의 연구실적물 심사 합격자 중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(3배수 미만인 경우 전원)로 한다. <개정 2005.9.29, 2011.1.6, 2012.9.19>

③ 면접시험 평가방법은 A·B·C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평가결과 B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. <개정 2011.1.6>

**제12조(임용기간 및 시기)**① 연구위원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, 본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총 기간은 일반연구위원은 직급 재직연한 10년 이내, 선임연구위원은 직급 재직연한 12년 이내, 책임연구위원은 만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5.9.29, 2006.1.27, 2007.8.22, 2010.11.10, 2011.1.6, 2012.2.28, 2018.11.14>

② 임용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에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임용할 수 있으며, 임용기간은 그 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전 학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 <개정 2011.1.6>

**제13조(재임용 시기)**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로 한다. <개정 2011.1.6>

[신설 2009.8.27]

**제14조(재임용 절차)** 제12조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연구위원에게 제15조에 따른 재임용 심사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마친 후 재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6, 2018.11.14>

[신설 2009.8.27]

**제15조(재임용 심사·평가)** ① 재임용할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6, 2018.11.14>

1. 대표 연구(사업)보고서 및 기초 평가표 <개정 2011.1.6>
2. 2년 이내의 저서 및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, 연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
3. 임용기간 중의 자기실적보고서 <개정 2011.1.6>

② 재임용 심사에 합격한 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1.6>

③ 제1항에서 정한 심사·평가의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신설 2009.8.27]

**제16조(재임용신청 및 결과통보)** ① 총장은 재임용 당사자가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통지하고, 재임용 당사자가 재임용을 원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재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6>

② 총장은 제1항의 재임용신청을 받으면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6>

[본조 신설 2009.8.27]

**제17조(이의신청 및 조정)** ① 재임용당사자는 제16조제2항의 결과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총장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시 재임용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6>

[신설 2009.8.27.]

**제18조(승진)** ① 대학은 연구위원의 업적을 감안하여 승진시킬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각 호에 따라 승진기회를 부여한다.

1. 일반연구위원은 4년 근속 후 평가를 통해 승진기회 부여

2. 선임연구위원은 8년 근속 후 책임연구위원 정원이 있을 경우 평가를 통해 승진기회 부여 [본조 신설 2018.11.14.]

**제19조(승진심사기준)**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.

1.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 연수
2. 최근 2회의 재임용 심사 결과
3. 연구위원평가위원회의 역량평가 결과
4. 인품, 청렴성, 경력, 기획, 집행능력 등 기타사항

② 제1항의 승진심사 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③ 그 밖의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18.11.14]

**제20조(휴직)** ① 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.6, 2018.11.14>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<개정 2011.1.6>
2.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, 여자 연구위원이 임신하거나 출산하게 된 경우 <개정 2011.1.6, 2012.9.19, 2018.11.14>
3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<개정 2020.4.23>
4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 <개정 2011.1.6>
5.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된 경우

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포함되므로, 휴직신청은 휴직기간을 뺀 남은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

[신설 2009.8.27]

**제21조(연령)** 연구위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?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? 제41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11.14>

**제22조(임무)**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1.1.6, 2018.11.14>

1. 교수-학습체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<개정 2011.1.6>
2. 모든 전문영역의 기초연구 및 개발
3. 교육매체 또는 전산시스템 분석과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업무
4. 총장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<개정 2011.1.6>

**제23조(복무)** 연구위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취업규칙(이하 '취업규칙)」 등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1.1.6, 2016.4.21, 2018.11.14>

**제24조(보수)** 연구위원의 보수는 대학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1.1.6, 2016.4.21, 2018.11.14>

**제25조(퇴직금)** 연구위원의 퇴직금 지급은 「취업규칙」 등 관련조항을 적용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1.1.6, 2016.4.21, 2018.11.14>

**제26조**(세부사항)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신설 2012.2.28>

**부칙** <제1111호,2020.4.23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(용어 정비에 따른 각종 규정 일부개정)